



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8.] [고용노동부령 제 228호, 2018. 10. 1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전용면적 20 제곱미터 이상에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자본 사업자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작성·비치할 의무가 있는 서류 중 근로계약서를 소개요금약정서로 서식과 내용을 변경·보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작성·비치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의 사무실 기준 완화(안 제18조, 별표 1의2 제12호)

1)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전용면적 20 제곱미터 이상에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무실 임대료 부담의 완화 등을 통해 소자본 사업자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함.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중 직업소개사무실은 직업소개사업만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고용센터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와 형평을 맞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8호, 2018. 10. 1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시 설계자 및 건축현장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 서식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시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8.] [환경부령 제773호, 2018. 10. 1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오염물질 방출 기준 이내임을 확인받은 건축자재가 그 이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확인의 취소 및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583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기준을 지하역사나 영화상영관, 학원의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는 한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를 정하고,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의 취소 및 해당 건축자재의 회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2제2호,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고,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

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 15594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35호, 2018. 10. 16. 공포, 10.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난용승강기의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4호, 2018. 10.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이를 반영하고,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2호, 2018. 10.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5581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된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위탁 취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상표등록출원인 등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자에게 반려이유를 통지하고 즉시 반려하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 등의 편의를 제고하고,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제를 점검한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의 재검토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8.] [해양수산부령 제 306호, 2018. 10.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의 보안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항만시설에 일정 수준의 해상도 기준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03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을 명시하고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근거·목적 및 촬영방법 등을 포함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23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5846호, 2018. 10. 1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정(調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책임재정 외에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8조 제3항 전단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5호, 2018. 10. 1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내 환경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가 환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46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실증실험 중심의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역량 제고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이 원활한 연구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수·폐수, 폐기물 등의 실험원료를 공공하수도관리청,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5810호, 2018. 10. 1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사건 처리결과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건축물 등의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실무적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권한일 뿐이고, 신

고대상 건축물은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기관이 소방관서에 그 사실 통지만 하고 있어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한편, 법률에 명시적으로 소방본부장 등이 건축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방청장 등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건축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제3항 신설).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제7조의2제1항 신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제7조의2제2항 신설).

라. 소방본부장 등은 화재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47조의3제2항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3호, 2018. 10. 1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제1항)의 징역형이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바, 간음죄임에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징역형(10년 이하)에 비하여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현행법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무거운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

형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함께 상향조정하여 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 29237호, 2018. 10. 1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누구나 기존규제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과 답변에 대한 소명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609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고,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에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89호, 2018. 10. 1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보다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수도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3호, 2018. 10. 1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집계한 주택 침수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3만 9천 건 이상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과거에는 하천이나 외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관거

로 집중되어 매년 내수침수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심지 침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오수관거 중심의 관거 정비사업이 지적되고 있음.

환경부는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종합대책 추진, ‘도시침수대응사업’ 등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침수예방 및 우수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도시침수 예방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침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8호, 2018. 10. 1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사업자의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실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12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

였을 때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의 보존기한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의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고,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여 단 한차례의 위반행위만으로도 입찰참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0호, 2018. 10. 1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은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5582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된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위탁 취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순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로서 심사관이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 순위에 따라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허청장이 지정한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1호, 2018. 10. 1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함(제31조제6호의 3).

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제31조제6호의4 신설).

다. 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제67조제2항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785호, 2018. 10. 1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함으로써 상가건물에 대해 장기계약,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786호, 2018. 10. 1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른 임시허가는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허가 등을 위한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못할 경우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개발자 및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한편, 4차산업혁명의 중심축인 정보통신 분야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분야이나 각종 규제에 인하여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 저해 및 일자리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따라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현행 임시허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장화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한 후 시장에 출시시키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우선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함(제3조의2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제36조의2 신설).

라. 신속처리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 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규정하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한편, 손해발생 시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임시허가 제도를 보완함(제36조 및 제37조).

마.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함(제38조의2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